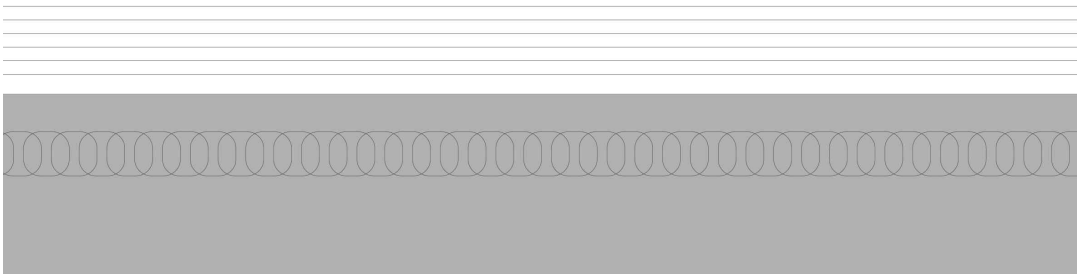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
리공단



❖ 평가결과 요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	① 감사의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감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 독립성· 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0>	B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① 사고발생 사전방지 및 사후조치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점검· 평가활동의 적정성과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B
3.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①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과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체계적· 효과적 감사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0>	B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① 외부감사운영· 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적정성	6등급평가	<10>	C
5. 투명·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 윤리경영 규정· 지침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C
6.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반영		<30>	B
평가종합			100	B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 · 독립성 · 윤리성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를 통해 국회 정책연구위원 및 교육부 담당 전문위원을 역임한 분을 선임하여 업무의 전문성은 보통 이상 수준이다.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제도가 구축되어 있고 상임감사가 서울대학교 감사최고위 과정을 이수하는 등 직무관련 교육실적이 양호하며, 상임감사가 외부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을 감사실 내부에 전파하는 등 전달체계가 양호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호하였다.

② 상임감사가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 · 윤리성 등 "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독립성 제고를 위한 실천노력으로 상임감사가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이사회 안건을 보고받아 감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이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였다. 기관 전체 인원 대비 감사인 비율이 2.88% 수준으로 타 기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8.75점 득점하였으며 재임 기간 중 사회적 비난이나 감독부처의 지적사항들은 없었다.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반 노력이 지표로 개발되어 BSC시스템에 반영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우수사례의 대외 발표 및 감사대상의 수상경력이 없어 대외적인 성과달성 노력이 필요하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 · 독립성 ·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위한 학습조직화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주 1회 정례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인들의 전문자격증(CIA)취득은

동 등 구체적 실천계획이 있다. 감사부서의 예산과 인사권은 감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감사부서 근무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등 독립성 확보 노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2.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발생에 관한 감사부서의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공단은 일상감사 및 입회 감사 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업무별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간접운용 투자 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취약분야의 개선을 위해 우수 운용사를 선정하여 간접운용 투자 위험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사례 억제를 위해 업무별 내재된 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한 임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공익신고제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평가 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공단은 기능적 측면 평가기준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 실효성) 과 관리적 측면 평가기준 (기획, 운영, 평가, 인프라)을 토대로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다음해 감사계획 수립 및 전략 수립, 이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감사시스템과 타정보시스템을 적절히 연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무정보 통제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및 인증, 내부감사업무의 품질수준 선진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 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경영견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회의체 출석과 의견진술 노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감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2006년 83%(5회/6회), 2007년 100%(8회/8회), 2008년 55%(5회/9회)이며, 감사실무 매뉴얼 제작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시제도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 직무, 감사인의 권한, 내부감사실시, 감사결과 통보, 감사결과 조치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내부 감사직무규정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감사기준별로 감사활동 수행방안을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감사규정과 연간감사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를 구분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의 비전인 ‘공단비전 달성과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사의 고유기능인 견제를 위한 기본적 감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② 기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감사부서의 점검·평가 활동은 적절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성과감사지향, 예방감사지향, 생산감사지향의 전략에 따라 경영진회의 등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교직원 상담일지 전산화, 직원근무평정 제도 보완 등의 개선권고 위주의 감사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지적사항 중 개선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상회하고 있다. 정책수립 단계에서 의견제시 및 대안제시와 민감한 사안의 업무추진시 실무부서와의 의견조율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의견서 발부 건수를 감소하였으며, 지부회관 임대료 산정 및 계약의 투명성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집중 감사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지적사항 96건 중 93건이 완결되어 사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에 대한 수용도 실시조사 결과 응답률 84%에 만족도가 70%에 이르고 있어 감사결과 사후조치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수범사례 발굴 전파 및 표창 등을 통해 피감사부서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피드백 효과를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로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의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 ①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부서의 운영·지원 및 협력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외부감사에 대한 운영, 지원 활동으로서, 공단은 2008년도에 상급기관 대
행감사 실시 및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 지원활동 등 외부 감사의 효
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외부회계감사
인의 선정 및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외
부회계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회계감사
인과의 의견교환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외부회계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결과를 내부감사절차 또는
감사리스크에 반영하여 내부감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감사 지적에 대한 사전감사활동 및 예방 감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단은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상감사, 현장감사, 정기감
사 및 기강감사 수행, 윤리점검 및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사로 인한 지적사항이 2007년에 20건에서 2008년에 50건으로
증가하였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6건) 및 국정감사(지적사항 5건) 결과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개선노력을 포함한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한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실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사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감사프로세스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적 개선노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후관리 Process의 표준화 및 체
계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5.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정보공개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와 자체 경영공시를 구분하여 그 대상과 운영주체를 달리 하고 있다. 공시자료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정책홍보팀이 취합 및 수정하고 감사실의 확인을 거쳐 다시 정책홍보팀이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공시된다.
 - 경영공시 정보의 주기적 점검도 책임자와 감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고객과의 쌍방향 대화채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정확한 정보공개를 기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주기라든지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2007년도 통합경영공시에서 인건비와 관련한 오류 1건을 지적받았다.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시정 완료하여 2008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전 임직원의 윤리 가치관 및 실천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정점으로 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CS/윤리자율실천 지침, 세부 운영기준 및 청렴계약 등을 제정 또는 시행하여 윤리경영 시스템의 구비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으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외 이해관계자로부터 부패, 부정행위 등을 신고받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사이버 클린신고센터 운영, 내부익명신고센터 운영, 반부패 청렴신고함 운영 및 신고자 포상, 직무청렴계약(임원) 및 직무청렴서약(보직자 33명), 감사인 윤리강령 실천결의대회 개최 등을 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실적으로는 감사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상임감사 교육, 감사인의 청렴의무에 대한 감사실장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의 내용, 수강인원, 질적 특성 및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2007년도 9.2에서 2008년도 8.8로 낮아졌으나 순위나 상대적인 면에서는 전년과 비슷하게 평가되었고 공직유관단체 평균청렴도(2007년도 9.2, 2008년도 8.6)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